

● 전국도서관 대회 제1주제 발표

全國圖書館協力組織의 編成原則과 國立中央圖書館의 役割

— 改定圖書館法의 適用을 위한 基本方向의 設定을 위하여 —

玄圭燮

〈공주사범대학교 도서관교육과 교수〉

1. 몇 가지 前提와 問題

國立中央圖書館(National Library)의 存在論의 意義를 한국의 圖書館法이 第二期的 變化를 시도하려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論證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1955年 Library Trends(Vol.4, No.1)誌에서 國立圖書館의 現趨勢(Current trends in national library)라는 제목하에 特집호가 간행된 후 비엔나 심포지움이 1958年 9月에 “國立圖書館 그 問題點과 展望”(National Libraries; their problems and prospect)라는 議題로 개최되었고 이어서 K.W. Humphreys에 의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定立되었다.

1971年에 입안되어 지금은 GIP(General Information policy)로 개편실시되고 있는 世界學術情報流通體制(Unisist)에서도 또한 強力한 어조로 國立圖書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76年에

“國家 및 國際情報시스템에 있어서 國立中央圖書館의 役割”을 친명한 로싼느 國立圖書館長會議의 정책 성명서는 NATIS(National Information System)와 연관된 情報政策이란 차원에서 再照明된 것이다.¹⁾ 이번 1987年 改定圖書館法은 위에든 여러 論議를 주체적이며 實現條件으로 놓축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하며 적어도 國立中央圖書館을 다룬 15條-16條와 圖書館協力網을 다룬 41條-44條는 이제까지 理論으로만 펼쳐왔던 理想의 具現이라 하겠다.

書誌的情報가 각급 민간차원에서 펼치는 네트워크(즉 Bibliographic utilities)에 의하여 활발히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國家의 次元에서의 네트워크 편성방침 또한 擴張되어 가고 있다. 英國圖書館(British Library)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BLAISE와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귀중한 선례를 남겼던 MERLIN(Machine Readable Library Information System)²⁾이나 日本에서 最近에 착실

1) 國立中央圖書館의 기능에 대한 論文은 1984年 國立中央圖書館 60周年紀念論文集 “變化하는 社會에 있어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責任”에 중요論文이 번역되어 게재되어 있으며 특히 K.W.Humphrey의 國立中央圖書館 機能이 故 張一世先生님의 번역으로 완결되어 있으며 Lausanne 國立圖書館會議의 정책성명서인 “The role of national librari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은 李炳穆 教授의 翻譯으로 중요 資料가 되고 있다. 기타 日本, 美國, 英國, 濟州, 加拿다 등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이 分析된 玉橋로서 集成되어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을 分析하여 연구하는데 반드시 參考하여야 할 論文集이 되고 있다. 이들 모든 논점이 이 論文集을 통하여 定立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MERLIN은 英國의 OCLC에 해당되는 事業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우릴 必要가 있다.

Sewell, P.H. Resource shar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Andre Deutsch, 1981.

한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NACSIS(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Information system)의³⁾의 實例가 이를 事例的으로 논증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諸次元에서 이번 改定圖書館法의 國立圖書館에 대한 條項과 協力網構成에 대한 條項은 분명하고도 정당한 論理性과 當爲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은 1984年 國立中央圖書館60周年紀念論文集에 수록하였던 抽論에서 정리된 것을 體系만을 보완한 圖表1과 같은 構成要素를 論點의 根據로 삼을 것을 이 論文의 前提로 한다.⁴⁾

이와 같은 論點을 감안한다면 改定圖書館法 중에서 圖書館協力網을 法條項대로 遂行함에 提起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추출될 수 있다.

첫째, 協力網을 형성하는 各級圖書館의 自發의이며 大局的인 協力意誌를 導出함에 있어서 이 法의 施行力만으로 效果가 있는 것인가? 만일 指定된 圖書館이 異議를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對策은 무엇인가? 또한 전혀 처음부터 參加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가? 적어도 法施行令이 制定完了된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할 方案은 法條文上으로는 없다. 協力이란 원칙적으로 法的強制나 公權的調置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自律의이며 受益의 관점에서 세워진 協力하려는 意志로써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公益은 私益을 制限하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 實踐的인 命題로서 協力網은 어떠한 事業을 펼침으로써 形成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改定圖書館法에는 암시적으로 電算化情報시스템, 書誌編纂등의 標準화, 分擔收書, 相互貸借, 綜合目錄등이 제시되고 기타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서 協力에 관한 모든 機能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規程하고 있다. 問題는 어떤 事業을 어떤 方法으로 착수할 것인가 하는 점과 특

히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이제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確定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존의 圖書館協力事業에 대한 상세한 分析과 事例의 研究가 必要하다. 이러한 問題點의 검토를 위하여 기초적으로 協力組織의 성격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協力組織에 있어서의 限界的條件

協力を 위하여 組織化는 必然的인 것이다. 두개以上の 個體가 共同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귀속된 資源이나 人力을 융합시키는 행위가 곧 協力일인데 이를 위한 相互間의 約定과 信賴에 기초한 組織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떠한 組織에 있어서도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原理는 이른바 Bernard-saymon理論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組織均衡理論을 토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圖書館協力組織에 있어서도 그例外는 아니다. 먼저 組織均衡理論의 限界的條件를 살피고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協力意誌의 限界를 分析함으로서 앞서 첫번째 問題로 提示된 協力組織參加(및 不參)의 條件을 들어 보기로 한다.

2.1 組織均衡理論의 限界的條件

미국의 경영학자인 Bernard, C.I.와 Saymon, H.A.는 하나의 組織이 均衡을 이루는 條件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⁵⁾

“組織에의 參加者は 組織自體에서 제공하는 誘因要素(그것이 金錢의인것이나 精神의인 것이나 간에)와自身이 組織에 提供하여야 하는 獻身(肉體의인 勞動이거나 또는 精神의인 것이나 간에)과를 比較하여 誘因要素가 獻身의 정도보다 클때에 그 組織의 構成員이 된다. 그렇지만 組織의 側面에서 볼때에는 誘因要素의 資源이 결국 構成員의 獻身의 程度와 正比例하게 됨으로 組織全體로 볼때에는 각각의 構成員

3) NACSIS에 관한 報告는 「文獻情報センターニュース」 No.1-No.11(1983-86)에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다. 발족에서 사업의 擴張에 이르는 분석은 筆者도 소개한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 주시하여 볼 대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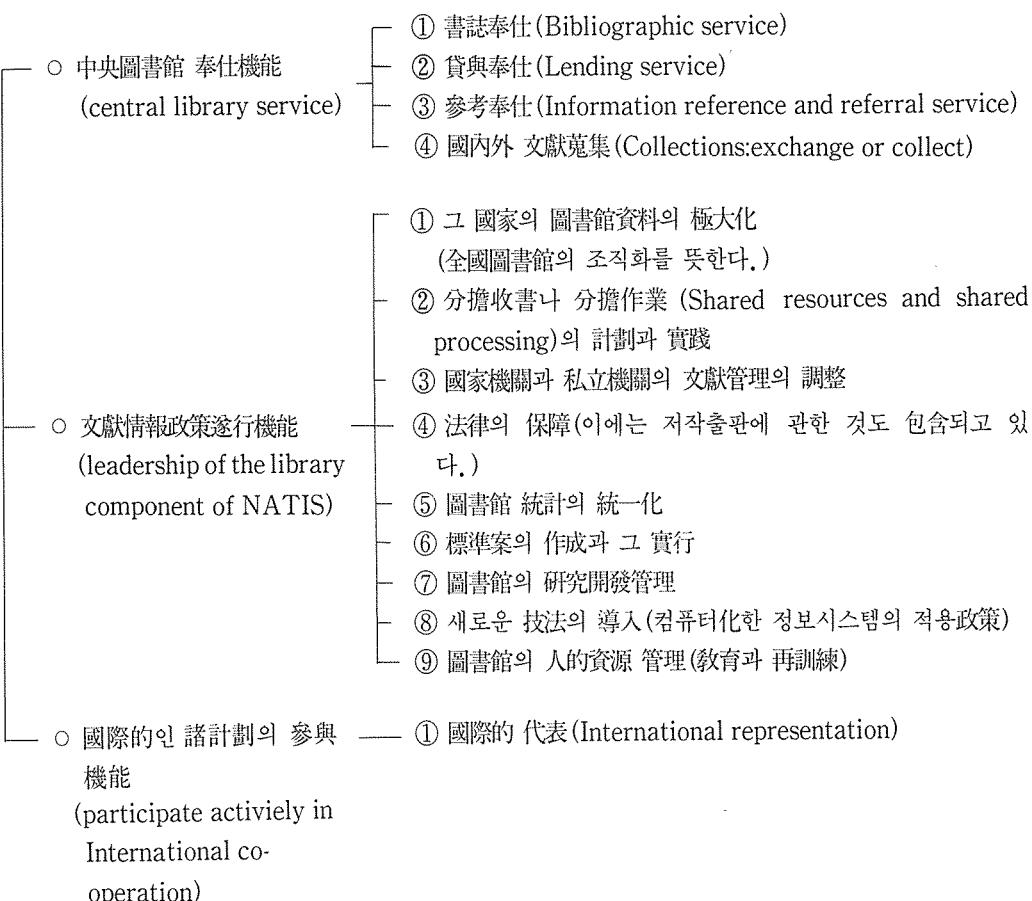
4) 抽論인 “國立中央圖書館에 賦課된 全國온라인 네트워크 編成의 責任과 權限” 變化하는 社會에 있어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과 責任: 國立中央圖書館開館 60周年 紀念論文集. 서울, 1984, p.119-140

5) Amitai Etzioni. The modern Organization. New York, Englewood Cliffs, 1969. pp.150-55

〈圖表 1〉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이 提供하는 獻身의 總和가 誘因要素의 總和보다 클 때에 한하여 當該組織이 存續된다.”⁶⁾

이 理論에서 參加者가 自身의 獻身의 程度와 組織의 誘因要素와 比較하여 受益의 價值가 클 때에 構成員이 된다는 第一次的 慾求는 圖書館協力이 時代의 召命이라는 價值體系속에 있다할지라도 이를 초월할 수 없다. 協力組織의 構成員은 終局은 受益의 價值에 입각하여 行為하리라는 限界的條件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協力組織의 中央館인 國立中央圖書館은 組

織의 運營者이며 管理者로서 처음부터 受益의 價值는 國家에 還元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하여 個個의 圖書館에 同一價值를 要求할 수 없는 것이다.

限界的條件의 두번쩨는 協力組織의 擴大는 大勢順應型의 參加者에 의하여 조성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含目的型의 參加를 希望하는 個體라도 大勢가 形成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全國的規模의 네트워크를 편성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⁷⁾ 이는 위에서 들었던

6) 根岸正光 “學術情報 システムにどう参加するか” フォーラム報告3. 文獻情報 センターニュース No.2. p.16-18의 요약을 인용.

7) 日本의 경우를 예전하였던 根岸正光 教授의 フォーラム 報告에서 네트워크 參加動機와 意識에 관하여 흥미로운 접근을 보였다.

參加者は ① 強迫觀念型 ② 興味本位型 ③ 大勢順應型 ④ 過剩期待型 ⑤ 過剩反應型 ⑥ 含目的合理型이 있음을 제시하고 대다수의 參加者は 大勢順應型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組織均型理論에서 構成員의 獻身의 總和가 誘因要素의 總和보다 클때 유지된다는 理論과도 결부된다. 즉 協力組織에 있어서는 數的強勢가 없는한 이를 存續시키는 基盤은 상실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初創期에 있어서는 大勢順應型의 多數者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組織의 定着이 어렵다는 限界的條件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이상의 두가지 限界的條件은 美國의 經營風土에 출발된것이라 하겠다. 韓國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例를 들면 우리에게는 親和的價值가 또는 名目的價值가 受益의價值를 초월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合目的型의 參加者로서 實際에 있어서 가장合理的인 組織參加者이며 읊바른 構成員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價值는 흔히 個人的性向에 의존되어 있으며 機關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發想의 貧困性이 노정되며 知期의適合性이 강조되어 實效를 삭감한다.

2.2 包括的價值와 個別的價值

앞서 살펴본 協力組織에 있어서의 限界的條件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定立되어야 할 몇가지 基軸原理가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組織의 編成主體는 이들 基軸原理가 協力體의 存立을 可能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깊이 인식할 必要가 있다.

먼저 協力組織의 包括的價值는 參加者の 個別的價值와 同一視될때에 極大化된다는 認識이 基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個別的價值는 實質的인 側面에서는 受益의 價值이다. 따라서 協力組織은 協同事業이 主任務가 되는 것이며 財政的 次元에서 볼때에는 個體의 損益金이 최소한 “零”的 상태에 머물던가 아니면 純益이 발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協力組織으로서의 分擔收書事業이 전개되는 경우 參加圖書館은 적어도 財政的 次元에서 損失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作業에 소요되는 경비가 支援됨으로서 計劃遂行이 活性화되어야 한다.勿論 包括的價值는 個別的價值에 우선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結果에 있어서의 附加價值이자 初創期부터 可視化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協力組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건이 된다.

따라서 모든 協力事業은 적절한 財源의 確保가 반드시 先行되지 않으면 않되며, 個別圖書館에 配分되지 않으면 않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組織의 進行을 確認하며 評價하는 方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協力組織의 展開를 위하여 또한 誘因要素의 擴大를 위하여서도 確認과 評價가 반드시 必要하다. 그것은 적절한 指導라는 개념에서도 必要한 조치인 것이다. 이 경우에도 먼저 先行條件으로서 編成原의 受益의價值를 提高시켰으며 그들에게 부과된 財政的支援이 있었을때 더욱 強化된다.

非豫算事業인 경우는 어떤가. 例를 들면 相互貸借와 같은 協力事業인 경우이다. 이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受惠者付擔原則이 適用되어야 하지만 貸與者가 되는 圖書館에게는 名目的價值가 提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부분 大規模圖書館인 貸與圖書館은 包括的價值에 중점을 두고 參與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더욱 강화시키기는 못한다.相互貸借制度가 電算化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지 못한다. 名目的價值의 提高는 貸出圖書館制度의 創出과 運營方法의 刷新등을 통하여 그들의個別의 價值도 고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事例는 英國貸出圖書館制度에서도 實證적으로 논증되고 있다. 상호대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大圖書館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名目價值가 提高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財政의 支援이 따라야 한다.

이와같이 包括的價值의 實現을 위한 個體의 支援이 財政의 支援과 組織制度의 支援으로서 實現되어질 때 協力組織은 發展되는 것이라 하겠다.

3. 協力組織과 프로그램

改正圖書館法에는 協力組織의 基本骨格을 제시하여 組織化能力을 부여하고 이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의 전개 가능성을 規定함으로서 이 法의 施行과 더불어 本格的인 圖書館協同의 時代를 열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살펴본대로 協力

組織의 限界的條件이 있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에 기초한 計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協力組織의 法的인 主體者이며 管理運營權者인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듯하다. 우리는 英國이나 日本등에서 圖書館協力組織을 형성하는데 많은 研究者를 동원하여 기초적인 研究를 시행하게 하고 이에 입각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음을 본다. 有名한 McColvin Report(1942)나 Backer Report, Dainton Report(1969)등에 의하여 英國의 圖書館은 全國的인 規模의 圖書館업무 확산방안을 실천시켜 왔다.⁸⁾ 日本의 경우에도 文部省에서 直接 學術審議會에 제청한 研究委囑으로 이루어진 答申書에 기초하여 현재 가장 방대하며 실천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인 NACSIS(=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Information System)가 형성되었다. 이외의 豪州나 미국의 각종 Report등이 전부 政府의 支援과 提請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기 작성되고 있는 이 論文도 사실은 보다 면밀한 分析과 广泛한 資料에 입각한 分析報告書이어야 하며 改正圖書館法에서 보장받고 있는 全國規模의 圖書館機能擴張이라는 大目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論文은 必要性의 認識 그 이상의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충실한 資料를 토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改定圖書館法 第41條-45條와 施行令 第28條를 구현하는데 方向設定이나마 열거함으로서 앞으로 있을 더욱 實踐的이며 심층적인 思考의必要性을 제기하는데 끝하고자 한다.

改定法이 中央館과 地域代表館 그리고 地方代表館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여 協力組織의 기틀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들 圖書館을 조직화 할 것인가는 생각되어져야 할 課題가 있다. 地域

(Region)을 行政單位로 조직할 것인지 아니면 文化圈으로 大區分(또는 細區分)하여 편성할 것인지 등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대체 어떤事業을 어떻게 展開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電算網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연상하지만 圖書館協力組織이 포용하는 영역은 보다 广泛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와 種類등을 전체적으로 總合하여 協同事業의 可能單位別 細目이 먼저 提示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先例의 研究와 分析을 통하여 각事業單位別로 成果到達의 原因과 특히 失敗의 原因이 報告되어야 한다. 다음으로(세 번째 項目으로) 優先順位의 決定이다. 우리의 圖書館風土와 環境에 비추어 어떤 事業이 먼저 전개되어야 하며 어떤 事業이 後續調置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導出되어야 한다. 끝으로 얼마만큼의 豫算으로 그것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적절한 答변이 주워져야 한다. 이 모든 事項이 한 사람의 意見으로 해답되어 지거나 즉흥적인 사변으로 해답될 수 없다. 다만 장차의 토의를 위하여 위에든 여러 事項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協同事業展開의 可能單位 細目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優先順位를 가려내보는 것으로서 우선 論議의 발단을 열어 두고자 한다.

3.1 協力事業이 可能한 諸單位

圖書館協力事業으로서 可能한 諸單位를 총람식으로 열거하여 일단 전체규모를 범주지우려 함이 이 부분에서 다루려는 목적이다. 물론 協力의 類型은 定型化되어 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創造的인 것이다. 따라서 총람식으로 열거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宿命的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不可 計의 協力事業을 현시점에서 정리하여 둘로서 다른 可能性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改定圖書館法을

8) 여기 인용한 Report의 관용적인 명칭은 다음의 보고서를 말한다.

McColvin Report=L.R. McColvin. The Public Library System of Great Britain.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42.

Backer Report=Ministry of Education. Inter-Library Co-operation in England and Wales, 1962.

Dainton Report=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Report of the National Libraries Committee,(Cmd. 4028), 1969.

시행함에 있어서도 全體模型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반드시 원천적인 研究의 必要性이先行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미흡한데로先行事例를 기초로 열거식으로 제시하여 본다.

協力事業은 圖書館의 機能別로 ① 協同收書分野 ② 書誌編纂分野 ③ 協同利用分野 ④ 協同프로그램

分野 ⑤ 情報네트워크分野로 大區分할 수 있다. 이들 大區分된 分野는 각각 納本制度의 協力運營, 協同收集, 協同保存, 綜合目錄등 單位事業으로 구성되고 이들 單位事業은 細部類型으로서 地域別 分擔制度를 비롯하여 主題別分擔, 形態・形式別分擔制 등으로 細區分될 수 있다. 이 方法으로 協同事業을 총체적으로 일별하면 다음表와 같이 된다.

〈圖表 2〉 協力組織이 전개가능한 協同事業

機能別區分	事業單位別區分	細部類型別區分	體制區分
協同收書分野	納本制度의 協力運營, 協同收集 協同保存 資料交換	地域別 分擔 國家別 分擔制 主題別 分擔別 形態・形式別 分擔制 包容年代別 分擔 중복・폐기자료 공동보존 特殊藏書의 分擔保存 國際間 國內機關間	• 全國的協力體制 • 圖書館館種別 協力體制 • 地域別 協力體制 • 館種間 協力體制
書誌編纂分野	綜合目錄 編纂 分擔目錄 作成 分擔索引・抄錄作成 分野別 書誌作成 印刷카드制	總體의 綜合目錄 形態・形式別 綜合目錄 包容年度別 綜合目錄 言語別・主題別(協同收集의 類型別 또는 위와 동일)分擔 (協同收集의 類型別과 동일) 內容目次速報 解題 등	위와같음
協同利用分野	情報處理機能分擔 相互貸借制 中央貸出圖書館制 巡迴文庫	Referral Center Data Center claring House 國際間 國內圖書館間	위와같음
協同프로그램	國民讀書運動 共同展示 共同教育 프로그램 共同文化 프로그램	階層別・地域別	위와같음
情報네트워크시스템	위에 書誌編纂分野 및 協同利用分野全般의 네트워크 편성 標準化의 推進		위와같음

納本制度의 協力運營은 英國의 納本制度를 事例로 들 수 있다. 著作權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영국의 납본제도는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동법 15條 2항에 보면 옥스포드大學의 보들리(Bodley)도서관, 캠부릿지 大學圖書館, 스코트랜드國立圖書館, 더블리市의 트리니티圖書館, 웨일즈國立圖書館에도 大英圖書館에 納本한 한부의 도서 이외에 당국이 지시한 위의 도서관중 한곳에 한부를 더 納本하게 되어 있다.⁹⁾ 이 制度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協力運營은 아니다. 그러나 納本의 運營方式의 한 사례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한다.

協同收書의 事例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Farmington plan¹⁰⁾ 있다. 國家別로 자료수집을 분담하였던 이 계획은 그후 NPAC(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 and Cataloging)으로 계승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관한 事例分析은 앞으로의 우리들이 시행할 제반 계획을 위하여도 충분히 분석되고 시행 착오 과정도 밝혀져야 한다. 協同保存도 유명한 USBE(United States Book Exchange)를 例로 들 수 있으며 자료교환은 함께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던 Exchange Centre制를 事例로 볼 수 있다. 綜合目錄은 너무도 많은 事例들이 있다. 다만 이러한 事例가 날날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들이 앞으로 시행하는 계획에 충실한 지침이 될 만큼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協同利用分野는 다분히 Unisist 보고서의 유형을 따른 것이다. Referral Center나 Data Centre 등과 같은 독특한 기관을 세워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을 수용할 수 있게 기능을 분담하는 협동계획등이 이에 속한다. 國民讀書運動은 全圖書館이 協同프로그램으로 전개될 수 있다. 日本의 讀書推進運

動協議會의 事業은 실은 도서관이 주축이되어 전개되어야 한다.¹¹⁾ 情報ネット워크의 편성은 이제까지 제시된 全體協同事業中 일부를 예를 들면 目錄의 分擔作業이라든가 綜合目錄의 편찬과 같은 사업-대상으로 조직되는 協力事業이다.

이와같은 协力事業의 單位 全般을 보았을때 이 중에서도 아무런 先行條件없이 먼저 시작되어도 무방한 事業單位와 어떤 事業이 그 보다 앞서 시작된 协力事業이 있었을 때 보다 効果的으로 전개되는 事業單位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論理를 세워나갈수 있을 것이다.

3.2 先導效果와 觸媒效果

어떤 协力事業이 優先的으로 展開되어야 할것인가. 이 물음은 어떤 事業이 先導效果를 갖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담합으로서 얻어진다. 先導效果는 優先順位로 채택되어 展開되어야만 그 效果가 증대됨을 의미하고 觸媒效果란 先導事業이 있어야만 그 效果가 증대됨을 뜻한다. 이와같은 方法은 1971年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Unisist)의 妥當性 報告書에서 채택되었던 바 있다.¹²⁾

앞의 <表 1>에서 보았던 协力事業中에서 先導效果가 가장 큰 것은 協同收集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綜合目錄의 편찬은 協同收集이 이루어지고 난 후속적인 조치로 이루어질 때 그 效果가 고조되는 것이다. 美國의 National Union Catalog가 이러한 사실을 예증하는 한가지 事例이다.¹³⁾ 協同利用프로그램의 展開도 先導效果가 있는 單位事業이 있다. 國民讀書運動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에 합당한 조직과 財源으로 출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실천되었을 경우 教育프로그램이나 文化프로그램이 촉매적 작용력을 일으킬 수 있다.

情報ネット워크시스템의 실천은 協同業務의 모든 分

9) 柳寅錫. 韓國의 納本制度에 관한 研究. [서울]延世大 大學院, 1982. 碩士學位論文. p.27-28.

10) 讀書推進運動協議會の二十年. 東京: 同協議會, 1970. 210p.

11) 抽論인 “Unisit의 目的과 韓國의 受容”도협월보, Vol.15, No.11(1974)과 Vol.16, No.1(1975)의 論文에 觸媒的要素와 계획의 준적 요소로 구분한 Unisist 계획 개요를 참조.

12) 미국의 National Union Catalog는 그뒤 있었던 인쇄카드 시스템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편찬이 시작된 것은 Farmington plan에 의한 國家別 分擔收書計劃이 진행되면서였다. 이것은 先行된 收書計劃에 의하여 綜合目錄이 觸媒的 作用力を 증대한 實例라 하겠다.

野에 병존하여 전개될 수 있으므로 先導效果와 觸媒效果를 고루 포용하고 있는 事業이다. 예컨대 納本制度의 協力運營은 처음부터 컴퓨터처리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것이 先導됨으로서 自動化시스템이 參加圖書館에 확산될 수 있다. 協同利用分野에서도 情報處理機能의 分擔은 최초부터 컴퓨터시스템으로 출범될 수 있다. Data Center의 數值資料등은 처음부터 컴퓨터미디아로 개발 처리와 이용의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OCLC나 UTLAS와 같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事例를 보면 역시 分擔目錄作成(Shared Catalog)이 先導的效果를 지니고 있다.¹³⁾

이와 같은 여러가지 관점은 가지고 協力事業의 諸效果를 가름하여 보면 〈表 3〉과 같은 模型을 도출할 수 있다.

이 表에서 協同收書分野는 전반적으로 先導效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書誌編纂分野나 協同利用分野는 觸媒의인 作用을 일으킨다고 풀이되어 있다. 실제에 있어선 이러한 모형이 圖式대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論理的으로는 相互貸借制度만(즉 축매적사업)이先行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綜合目錄이 없으면 效果는 반멸되며 綜合目錄編纂에 있어서도 協同收書의 效率性이 없으면 또한 그 效果가 반멸되는 것이다.

거듭되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國民讀書運動도 協力事業으로 전개된다면 대 국민적인 차원에서 또는 대 정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에 출판사가 전개하고 있는 문화공간 설치 경향에 대하여 도서관계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表 3〉

協力事業의 先導 및 觸媒效果

協同프로그램		協 同 收 書 分 野 全 般		情報ネット워크 시 스템
先導效果	國民讀書 運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擔目錄 • 納本制度의 協力運營 • 分擔索引 抄錄作成 • 印刷카드 • 情報機能分擔
觸媒效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展示 • 共同教育프로 그램 • 共同文化프로 그램 	書誌 編纂 分野	協 同 利 用 分 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綜合目錄 • 相互貸借 • 分野別 書誌作 成 • 中央貸出圖書館 制(等)

13) The Role of the Library of Congress in evolving national network:a study commissioned by the L.C. Network Development office and Funded by NCLIS.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78.

4. 理論的모델과 實像의 照明

이제 앞서 보았던 理論的모델을 現實的實像에 비추어 보기로 한다. 우리의 實像(協力에 있어서의)을 分析하고 合理的인 方案을 제시하였던 先行研究로는 최근에 조유근(서울大 教授), 최성진 教授 등의 研究報告書가 있다.¹⁴⁾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圖書館界는 效果의이며 실질적인 協力體制가 全國的인 規模로서는 아직은 實現되지 않고 있다. 설혹 일부 館種에 국한된 效率的인 協力體系라 할지라도 分擔分野의 調整이나 機能의 分化등이 制度의으로 定着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더욱 깊은 省察과 調查가 있어야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4.1 限界的條件의 實像

協力組織에는 限界的條件이 있다. 그 實像을 우리는 相互貸借制度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1968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相互貸借制度를 출범시킨바 있다.¹⁵⁾ 그러나 이 制度는 現在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외국도서 종합목록」은 어떤가. 이 制度는 90여개관에 이르는 會員을 中心으로 1970年 아래 지속되어 왔으나 그 以上에 아무런 발전도 도모하지 못했다. 외국도서 종합목록이 지속되어 온 것은 그나마 國庫에 의한 예산조치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協力組織의 均衡論理에 입각하여 發展된 것이 아니라 親和的價值(또는 名目的價值)에 기반을 두어 왔기에 그 이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改正圖書館法을 시행하려는 이 時點에서 우리는 協力組織의 限界的條件은 參加圖書館의 受益의 價值가 提高되는 公共基金의 支援이 없는 한 성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協力事業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14) 조유근[等], 한국학술정보유통체계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학술진흥재단], 1982.

최성진[等], 전국도서관자원 네트워크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문교부], 1984.

15) 상호대차제도는 당시 亞細亞財團의 원조를 얻어 市內10개 도서관으로 편성되는 제도로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69년 당시의 國立中央圖書館 當面施策 分析表에 “各圖書館의 藏書目錄 不備로 活潑한 運營에 障碍가 되고 있다”는 기록만 남긴채 당시 李昌世館長의 사퇴와 더불어 소멸되어 버렸다. 李昌世著. 國立中央圖書館 論考.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4. p.156-157.

4.2 先導效果事業의 定立

3項의 1, 2節을 통하여 볼 때 先導效果가 가장 큰 分野로는 세가지 單位事業이 지목되었다. 한국의 現實을 볼 때 아래와 같은 세 가지는 先導事業으로 먼저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協同收書分野의 納本制度의 協力運營이다. 納本은 改定圖書館法施行令 19條 第5項에서 납본의 편익을 위하여 地域代表圖書館에 납본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英國의 納本制度가 가장 적합한 實事例가 된다. 이 法의 실시는 물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결정에 의한다. 만일 납본업무의 위탁이 조직망형성의 법적근거(법 제43조)에 둔 지역대표관에게 지명된다면 협력 조직을 형성하는 先導效果로는 가장 큰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全國書目을 편찬하기 위한 地方圖書館의 協力이 이루어지며 컴퓨터에 의한 네트워크 또한 가능한 것이다. 즉 촉매효과로서 情報네트워크시스템이 편성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 協同收集이 先導事業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國家別分擔制는 현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課題이다. 國際的相關性이 증대되는 국가발전의 경향에 비추어 各國이 主要文獻의 確保가 均衡있게 수집되어야 함은 아마도 圖書館界만이 인식하고 있는 자각일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圖書館人의 歷史的인 課題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Farmington Plan이나 NPAC(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 and Cataloging)은 이 事業의 중요성을 실증하는 事例일 것이다.¹⁶⁾

세번째, 先導事業은 國民讀書運動이다. 이 事業은 協同프로그램으로 1970年代 初期부터 지금껏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해왔던 運動이었다. 이와 같은 運動을 구체적인 圖書館의 使命으로 전환할 必要가 있으며 또한 實現可行性이 많은 單位事業중의 하나이다. 덴마크의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의 協力關

係는 學生의 讀書指導에서 연계되었던 事例를 可能性의 표본으로 삼는다. 또한 日本의 讀書運動推進協議會 등의 사업을 연구하여 가능한 사업을 전개함을 하나의 실례로 삼을 수 있다.

네번째, 分擔目錄作成의 컴퓨터 시스템화가 先導되어야 한다. 말할 나위없이 KOR MARC시스템의 확산을 통한 분담목록(shared cataloging)이 실천되어야 한다. LC의 경우 COMARC(Cooperative MARC)가 전개되었던 사례를 지표로 삼아 먼저 韓國의 出版物만을 대상으로 先導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綜合目錄의 完成을 지향하여 나갈 수 있다.

日本의 NACSIS는 이러한 事例의 實證的 現實로서 가장 적당한 標本이다.

이외에도 書誌統整事業, 標準化의 推進, 索引·抄錄作成方向의 支援 등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나 이들은 위에 든 네가지 先導事業의 觸媒力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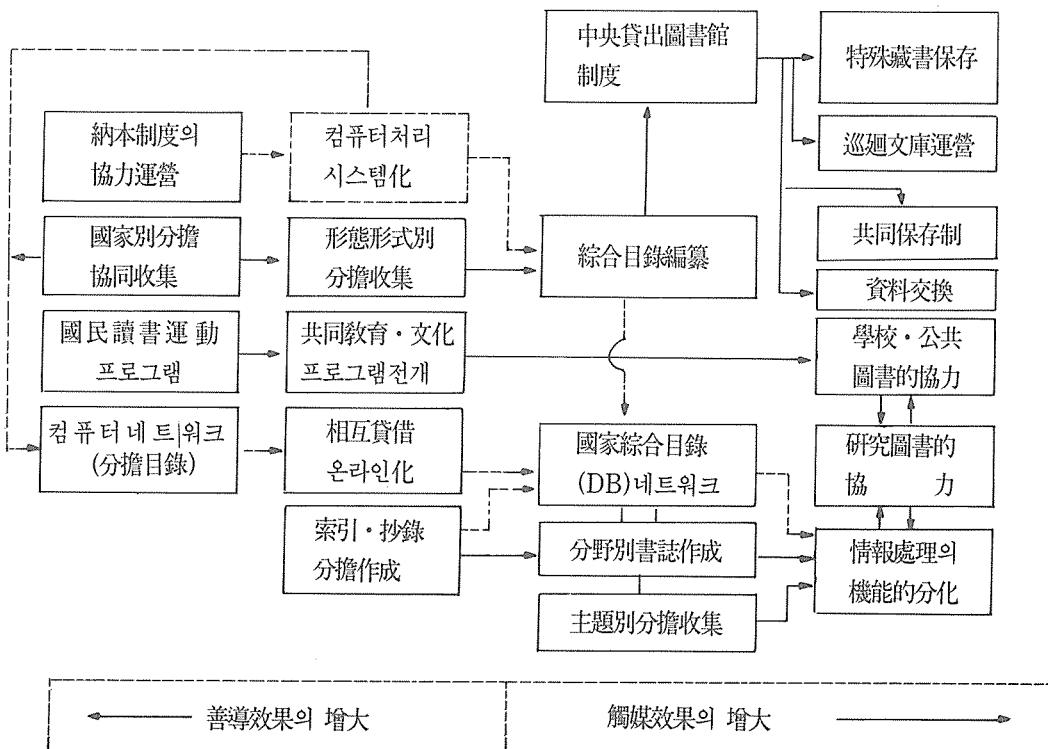
4.3 觸媒效果的 事業의 展開

先導事業이 確定되면 우선적으로 이를 協力體系로 基幹組織을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후속事業을 유도한다. 協同收集의 單位事業內에서 國家別分擔計劃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主題別分擔制도 추진될 수 있으며 協同保存의 問題도 점차 特殊藏書의 保存등을 추진할 수 있다. 現實與件의 變化와 館種別로 처하고 있는 環境의 差異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協力事業이 先導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한 후속적인 觸媒力이 있는 事業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全般的으로 이 問題를 定立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協力組織이 전개해야 할 現實的 與件에서 본 諸事業의 優先順位는 〈表 4〉와 같이 整理하여 볼 수 있다.

〈圖表 4〉

先導 및 觸媒效果로 본 順位



納本의 協力化를 통하여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이를 토대로 한국의 도서관이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國家綜合目錄의 데이터 베이스를 편성할 수 있다. 協同收集은 최초에는 각 국가별 대상으로 전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主題別로 분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日本의 雜誌센터의 事例와 같이 형태별 분담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촉매가 되어 綜合目錄이 편찬될 수 있을 것이다. 索引이나 抄錄의 분담작업도 매우 시급한 事業이지만 충분한 事前準備와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느니 만큼 초기사업보다는 후속사업으로 전개되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 중앙대출도서관 제도 공동보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공동노력등은 촉매적효과의 성격이 많은 協同事業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몇가지 示唆點

결론적으로 改定 圖書館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協力事業에 대한 심충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이제부터 시행될 제반계획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도서관계가 오랜기간에 걸쳐 시행하여 왔던 协力事業이 순탄하게 추진되어 오지만은 않았던 모든 理由를 밝히고 앞으로 있을 당면한 과제를 원활이 운영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제시된 것 이지만 영국이나 일본이 研究者를 지목하거나 學術審議會에 의뢰하여 방대한 연구를 추진시킨 事例가

있다.⁽¹⁷⁾ 이 論文에서는 원천적인 문제로서 協同組織의 限界的條件이 있음을 밝히고 包括的價値와 個別的價値가 상호작용되고 있음을 증명코자 하였다. 이 事例는 英國의 貸出圖書館制度에서 (현재 BLDSC에서 주반되고 있는) 체택하고 있는 名目價值의 提高方法을 적절한 예로 들었다. 또한 協力組織이 전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單位事業을 열거하여 보았다. 실제로 여기 열거된事業들은 적절한 事例가 모두 있지만 그 分析은 범위의 광역성이나 보다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생략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의 事例가 낱낱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¹⁸⁾ 그리하여 그 장점과 단점이 밝혀짐으로서 한국에서의 재반복되는 실패의 현상이 방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先導效果가 있는 協力事業을 가려내었다. 즉 앞서 개발가능한 協同事業으로서 協同收書分野를 그리고 協同프로그램에서는 國民讀書運動을 들었던 것이다. 情報ネット워크分野에서는 分擔目錄시스템을 제일 앞에 제시함으로써 先導效果의 協力事業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觸媒效果의 協力事業이란 개념을 세우고 이에는 共同展示, 相互貸借, 中央貸出圖書館別 등을 가려 놓았다.

끝으로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한국에서의 協力事業의 적용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先導效果事業으로는 納本制度의 協力運營을 가장 가능성이 짙고 후속되는 觸媒效果면에 있어서도 큰 것으로 지적하였다.

두번째는 國家別分擔收書를 한국에서의 NPAC을 실현시킨다는 가정하에 실현성 높은 协力事業으로 제시하였다. 세번째로는 國民讀書運動을 전체 도서

16) NAPC와 Farmington plan은 연속되는 사업으로서 협동수서와 分擔目錄이結合되어 있다. 이를 두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룬 論文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hepard, Marietta Daniels. Cooperative Acquisition of Latin American Mat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Summer, 1969, Vol.13, No.3, pp.347-360

Annual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for the Fisical Year Ending June 30, 1967. Washington, L.C., 1968, pp.30-36

17) Dainton Report가 영국도서관계에 공헌한 바는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일본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많은 研究報告書에 기초하여 圖書館發展政策이 수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年에 실시된 “巨大學術情報システム”的 연구나, 最近(1986년)에 연구된 “學術情報システム의 環境分析과 構策프로세스의 研究”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18) 미국의 議會圖書館에서 실시되고 있는 NPAC의 分析評價, NACSIS의 分擔目錄運營등은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協力方向에 귀중한 事例가 된다. 영국이나 미국의 National Union Catalog 편찬 방법이나 최근에 미국에서 시행된 ReMARC (Retrospective MARC)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관이 일제히 전개함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協力할 수 있음을 지목하였다. 네번째로는 MARC에 의한 協力作業(Cooperative MARC)을 가상하여 이를 分擔目錄作成形式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들 先導事業이 추진되면 觸媒効果로서 이루어지는 諸事業들이 후속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관계 모형을 綜合目錄의 データベース편성, 分野別書誌作成(주로 索引·抄錄의 作成), 學校·公共圖書館이 協力 등을 중심으로 연관시켜 보았다. 圖表4는 아직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協力事業

의 상호관계를 설정한 개념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는 어떤 事業이건 하나도 난관없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선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적절한 財源의 確保가 필수조건이다. 언제나 그러하듯 圖書館法의 實効性은 豊算事業이 되면 停止된다. 그러나 이번 改定된 圖書館法에는 發展委員會라는 對政府發言機構가 있으며 도서관진흥기금이라는 橫的인 支援手段도 있다. 중요한 것은 圖書館人の 意志力과 實踐力이라 하겠다.